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김 종 선 의원)

의안 번호	21-138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11.

발 의 자 : 김종선, 강명숙, 김기석,
김성희, 김진천, 최은하

1. 제안이유

조례 문구 중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문의 제목 변경(안 제3조)

- “제3조(조례의 범위)”를 “제3조(적용 범위)”로 변경

나. 불필요한 중복 표현 삭제 정비(안 제6조제1항)

- 제3호, 제7호의 “구 관할 구역” 삭제

다. 조문의 적용대상 확대(안 제8조제1항)

- “구민”을 “누구든지”로 변경

3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
4. 기타

가. 입법예고: 2021. 11. 19. ~ 2021. 11. 24.

나. 개정조례안: 붙임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조례의 범위)”를“(적용 범위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”을 “버스정류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”을 “지하철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구민이”를 “누구든지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조례의 범위) (생략)	제3조(적용 범위) (현행과 같음)
제6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6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</u> 10m 이내	3. <u>버스정류장</u> ----- -----
4. ~ 6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</u>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	7. <u>지하철역</u> ----- -----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금연구역 표시 등)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<u>구민이</u>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	제8조(금연구역 표시 등) ① ---- ----- ----- <u>누구든지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마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김경연
연 락 처	00-3153-9053

[관 계 법 령]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